

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11월 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세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일부 개정(2024.10.04.)됨에 따라,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예산에 편성·집행하도록하여 투명한 집행을 도모함 : 안 제11조2(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)

(신설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- 별표 「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5조제2항 관련)」을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, 금고 선정평가에 적용하고자 함.

(조정) 항목 1~5까지는 일부 배점을 조정하고, 항목6에
자치단체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배점 반영(11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. 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2. 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10. 23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일부 개정(2024.10.04.)됨에 따라,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예산에 편성·집행하도록하여 투명한 집행을 도모함 : 안 제11조2(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)
(신설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- 별표 「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5조제2항 관련)」을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, 금고 선정평가에 적용하고자 함.

(조정) 항목 1~5까지는 일부 배점을 조정하고, 항목6에

자치단체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배점 반영(11점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「동법 시행령」 제48조에서 금고 업무의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기타사항은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두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제5조제3항 군과 금고의 협력사항 추진시 유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
- 제5조제2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별표를 개정하여, 1~5항목까지의 배점을 조정하고, 자율항목 6항을 우리 군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함으로써,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회계법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

[1]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

○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 표>의 기준으로 평가함

가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25)

나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7)

다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8)

라. 금고업무 관리능력(22)

마.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(7)

바. 기타사항 -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(11)

※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5조제2항 및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·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

○ <별표>의 기준 중 항목 6(기타사항)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

가.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(예시① 참조)

나.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(11점)을 항목 1, 2, 3,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(예시③ 참조)
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

-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)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,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

※ 다만,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

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23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일부 개정(2024. 10.04.)됨에 따라,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,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예산에 편성·집행하도록하여 투명한 집행을 도모함. : 안 제11조2(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)

(신설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나. 별표 「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5조제2항 관련)」을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, 금고선정평가에 적용하고자 함.

(조정) 항목 1~5까지는 일부 배점을 조정하고, 항목6에
자치단체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배점 반영(11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5.9.12.~2025.10.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평창군 공고 제2025-1357호, 세정과-13896(2025.9.11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[기획예산과-14202(2025.9.10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[기획예산과-14202(2025.9.10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33859(2025.9.10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5801(2025.10.14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16298(2025.10.20.)호]

평창군 금고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금고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③ 군과 금고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1.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(단,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)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2.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었으면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.

3. 금고약정서에 군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군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II.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

○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금고지정 기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군과 금고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(단,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)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<u>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었으면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.</u></p> <p>3. <u>금고약정서에 군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군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금고지정 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 삭제 ></p>

<신 설>

제11조의2(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)

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현 행

II.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1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점)

㉠ 국외 평가기관 평가(6점)

-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(Moody's), 애스애파(S&P), 피치(FITCH)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

배 점	등 급 별 배 점				비 고
	최고등급	상위등급	보통등급	요주위등급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

㉡ 국내 평가기관 평가(4점)

-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,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

배 점	등 급 별 배 점				비 고
	최고등급	상위등급	보통등급	요주위등급	
4.0점	4.0점	3.5점	3.0점	2.5점	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점)

-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·확인(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)

㉢ 총자본 비율(7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
7.0점	7.0점	6.5점	6.0점	5.5점	5.0점	

㉣ 고정이하여신비율(7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
7.0점	7.0점	6.5점	6.0점	5.5점	5.0점	

㉤ 자기자본 이익률(6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20%이상	16%이상~20%미만	12%이상~16%미만	8%이상~12%미만	8% 미만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개 정 안

II.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

○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 가할 수 있다.

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항 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로 한다.

현 행

㉔ 대손 총당금 적립율(1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
1.0점	1.0점	0.9점	0.8점	0.7점	0.6점	

2. 군에 대한 예금·대출금리(18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나. 공공예금 예치금리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(4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4.0점	4.0점	3.6점	3.2점	2.8점	2.4점	

3. 군민 이용의 편의성(20점)

가. 군내 지정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7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7.0점	7.0점	6.3점	5.6점	4.9점	4.2점	

다.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8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8.0점	8.0점	7.2점	6.4점	5.6점	4.8점	

개 정 안

현 행
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(22점)

가. 세입·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7.0점	7.0점	6.3점	5.6점	4.9점	4.2점	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7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7.0점	7.0점	6.3점	5.6점	4.9점	4.2점	

라. 지방세입금 전담 전산센터 운영실적(3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(9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(4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4.0점	4.0점	3.6점	3.2점	2.8점	2.4점	

개 정 안

□ 지방회계법(법률제19634호)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회계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4408호)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 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 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(법률 제20870호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지방재정법(법률 제20871호)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전 재 준
연락처	(033) 330 - 2270